

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

의안 번호	20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0. 18.

발의자 : 신동윤 의원 등 2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철회 요구함.

2. 철회사유

-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체심의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71조
-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

